

투자위험등급: 3등급
[중간 위험]

유진자산운용(주)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5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진 챔피언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진 챔피언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 합 투 자 기 구 명 칭 : 유진 챔피언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 합 투 자 업 자 명 칭 : 유진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5년 11월 24일
5. 증 권 신 고 서 효 력 발 생 일 : 2015년 12월 03일
6. 모 집(매 출) 증 권의 종 류 및 수 : 이 투자신탁은 모 집(매 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 집(매 출) 기 간(판 매 기 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 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 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유진자산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8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7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3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 풀이	61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유진 챔피언배당주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AN373)										
(종류) 클래스	A	A-E	C	C-E	C-F	C-W	S	C-P1	C-P2	C-Pe	S-P1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N374	AN375	AN376	AN377	AN378	AN379	AQ280	B2873	B2874	B2875	B287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펀드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집규모 및 모집(판매)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 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fund.eugenefn.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 또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유진 챔피언배당주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N373)										
(종류) 클래스	A	A-E	C	C-E	C-F	C-W	S	C-P1	C-P2	C-Pe	S-P1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N374	AN375	AN376	AN377	AN378	AN379	AQ280	B2873	B2874	B2875	B287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13.12.16.	최초 설정
2014.01.02.	운용역 변경
2014.02.27.	모자형 구조 변경 및 환매수수료 정정, BM지수 변경
2014.03.14.	S클래스 신설 및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
2014.08.25.	(주식)책임운용인력 변경 및 채권등급 상향, 주식운용전략 일부 수정
2015.03.27.	정기갱신
2015.05.13.	연금클래스(Class C-P1, Class C-P2, Class C-Pe, Class S-P1) 신설
2015.07.01.	공모주 투자전략 추가
2015.12.03	환매수수료 삭제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유진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대표전화: 02-2129-33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5.11.24 현재)

성명	직위	운 용 현 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황봉연	주식운용 2팀 팀장	63개	2,158억원	대우증권 국제조사부 (1999.01~2001.03) JPMorgan증권 영업부 (2001.04~2002.02) 대본서코리아 (2002.12~2004.08) 씨앤앤 (2005.02~2006.05) 그린손해보험 투자팀 (2006.05~2007.10)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2007.10~2010.11) 리딩투자증권 투자전략센터 (2010.11~2011.02) 한셋투자자문 자산운용본부 (2011.02~2012.01) 유화증권 주식운용 (2012.06~2012.08) 現 유진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2012.09~현재)
윤성주	채권운용팀 이사	65개	1조 2,172억원	장은증권(1992.01~1999.05) 제일선물(1999.06~1999.09) 現 유진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1999.10~현재)

※ 상기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운용규모:

성명	수(개)	운용규모(억원)
황 봉 연	1	4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로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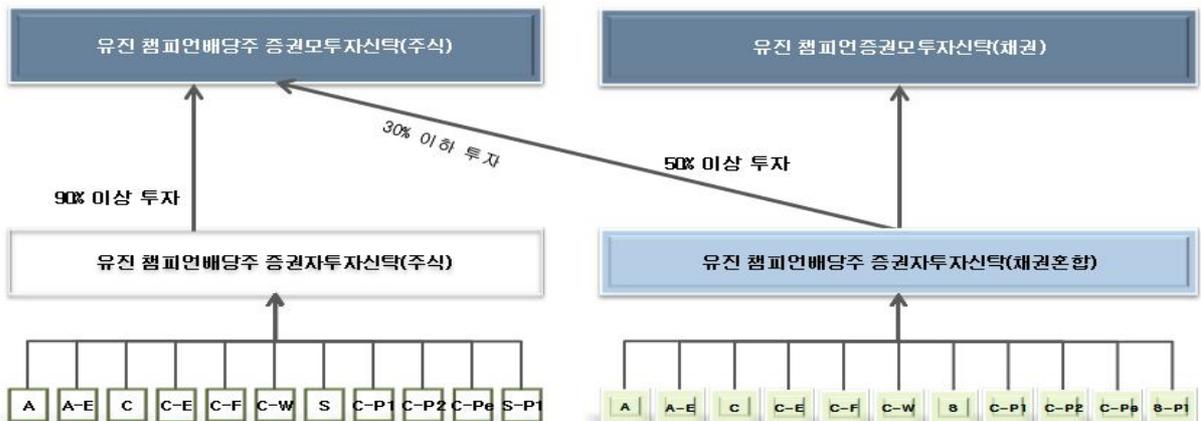
주2)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책임)운용전문인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 사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황 봉 연	2014.08 ~ 현 재
송 우 연	2014.01 ~ 2014.08
박 순 업	2013.12 ~ 2014.01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종류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운용됩니다.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Class A	Class A-E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W	Class S	Class C-P1	Class C-P2	Class C-Pe	Class S-P1	
최초 설정일	2013.12.16	2014.09.02	2014.09.02	2014.09.02	미설정	미설정	2014.04.22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가입 자격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 부과	판매회사 온라인(On-line) 전용이며, 판매수수료 부과	제한없음	판매회사 온라인(On-line) 전용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100억원 이상 매한 개인 및 500억원 이상 매입한법인	판매회사 일임형 Wrap Account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및 아래의 Class S 가입자격 참조	연금저축계좌 전용 (Class C-P1 가입자격 참조)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Class C-P2 가입자격 참조)	온라인에서가입 가능하며, 연금저축계좌 전용 (Class C-Pe 가입자격 참조)	연금저축계좌 전용 (Class S-P1 가입자격 참조)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0% 이내	납입금액의 0.35% 이내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집합투자업자	연 0.40%	연 0.40%	연 0.40%	연 0.40%	연 0.40%	연 0.40%	연 0.40%	연 0.40%	연 0.40%	연 0.40%	
	판매회사	연 0.40%	연 0.20%	연 1.00%	연 0.50%	연 0.04%	연 0.00%	연 0.25%	연 0.80%	연 0.75%	연 0.40%	
	신탁업자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사무관리회사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총 보수	연 0.85%	연 0.65%	연 1.45%	연 0.95%	연 0.49%	연 0.45%	연 0.70%	연 1.25%	연 1.20%	연 0.85%	연 0.69%

- 주1) Class S 가입자격은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 주2) Class C-P1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 주3) Class C-P2 가입자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 주4) Class C-Pe 가입자격은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 주5) Class S-P1 가입자격은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이면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 주6) Class C-F가입자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①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②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③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주7)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 시)환매시점에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 주8)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자가 최초 매입하는 Class A, Class A-E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과되며, 각각 납입금액의 0.70%, 0.35%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9) 후취판매수수료는 Class S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과되며, 환매 시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이 3년 미만인 경우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후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10) 다른 종류간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 주11) 보수외의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 투자신탁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유진 챔피언배당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유진 챔피언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유진 챔피언배당주 증권자투자신탁(주식)	90% 이상	-
유진 챔피언배당주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30% 이하	5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유진 챔피언배당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 배당주종목군에 전체 주식투자 자산총액의 70%수준에서 투자하여 우량 기업의 배당수익을 확보하고, 신배당 트렌드종목군에 주식투자 자산총액의 30%수준을 투자하여 +α 추구 (단, 전통적 배당주종목군과 신배당 트렌드종목군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비율로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전략으로 공모주 투자 : 투자심사를 통해 선별된 중대형급 공모주에 참여하여 상장에 따른 초과수익 확보 개별 종목의 분석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유진 챔피언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주요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신용등급 AA- 이상)등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 어음(A2-이상)에 40% 이하 투자
	투자목적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채권투자를 통한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추구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한 시장대응으로 지속적인 이자수익과 제한된 범위내에서 자본수익 추구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을 중심으로 운용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금리 리스크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수익률 곡선상 채권보유에 따른 Rolling effect가 우수한 채권에 투자 섹터간 스프레드를 고려하여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 듀레이션은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제한된 범위(1.5년)내에서 관리 펀드성과요인과 리스크 요인 분석의 시스템 체계를 통해 자금운용의 위험요인 통제
	등록신청서 효력 제출일	2014년 2월 7일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 채권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자소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의 종류 / 투자한도 / 투자대상의 조건)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	------	-------

①모투자신탁 수익증권	50%이상	유진 챔피언증권모투자신탁(채권)
	30%이하	유진 챔피언배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다만, ①의 투자비율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②단기대출	10%이하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③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유진 챔피언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①채권	60%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②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③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집합투자증권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단,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다만, 법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대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⑤장내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⑥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⑦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증권의 차입		상기의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⑨단기대출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⑩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의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⑪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⑫양도성 예금증서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④~⑧ 및 투자제한 ②~⑤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유진 챔피언배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①주식	60%이상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②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③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

		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 인 것
④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집합투자증권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만, 법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⑥장내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 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⑦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⑧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⑨증권의 차입		상기의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⑩단기대출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⑪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의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⑫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⑬양도성 예금증서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⑤~⑨ 및 투자제한 ②~⑥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이해관계인과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거래	<p>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해당하는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p>	
----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유진 챔피언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해당하는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p>	
②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산정</p> <p>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③파생상품 거래	<p>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④집합투자증권에 투자	<p>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합니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나.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p> <p>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⑤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합니다.)을 취득하는 행위	
⑥후순위채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사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⑦금전의 차입	<p>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법제235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2)법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신탁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의 상환 전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p>	
⑨금전의 대여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시행령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다.</p>	
⑩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p>	
⑪투자한도 초과	<p>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발행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p>	

▶ 유진 챔피언배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해당하는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p>	
②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산정</p> <p>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 1개월간 적용)이 10%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p>	
<p>③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p>	<p>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④파생상품 거래</p>	<p>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⑤집합투자증권에 투자</p>	<p>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합니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나.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p> <p>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p>	

	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⑥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합니다.)을 취득하는 행위	
⑦후순위채권에 투자	투자신탁자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사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⑧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법제235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법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신탁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의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⑨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시행령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다.	
⑩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⑪투자한도 초과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발행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50% 이상을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제한된 범위내에서 자본수익을 추구하고, 국내주식(전통적 배당주종목군 + 신배당 트렌드종목군 + 공모주종목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주

식형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30% 이하로 투자하여 자본이익과 배당이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채권형)입니다.

▣ 비교지수: KOSPI 배당지수 (30%) + 매경BP단기지수 (70%)

주1) KOSPI 배당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 중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대표성과 유동성 및 수익성을 만족하는 종목으로 구성하는 바,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안정배당지표가 우수한 50종목을 구성종목으로 산출된 지수이며, 본 지수는 한국거래소(www.krx.c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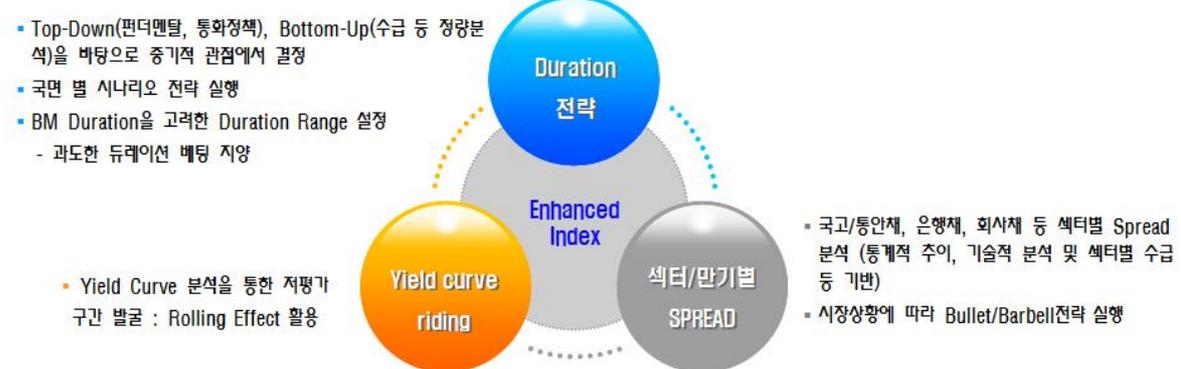
매경BP단기지수는 신용등급 A-이상의 국내채권(1,400종목 내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목표 듀레이션은 0.6~0.75년입니다. 또한 본 지수는 한국자산평가(www.koreaap.com)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2)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유진 챔피언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유연한 시장 대응으로 지속적인 이자수익과 제한된 범위내에서 자본수익 추구
- 추가수익 달성을 위한 전략의 다양화(듀레이션 등 특정전략 의존 지양)
-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면서 Relative Value Trading을 통해 초과수익 추구
 - 수익률 곡선상 채권보유에 따른 Rolling effect가 우수한 채권에 투자
 - 섹터간 스프레드를 고려하여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
- 듀레이션은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BM대비 제한된 범위(1.5년)내에서 관리



※ Duration(듀레이션)이란? 각기의 현금 유입을 만기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장래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가중하여 구한값으로, 현재가치 1원이 상환되는데 소요되는 평균상환기간

※ Yield Curve(수익률 곡선)란? 금리의 만기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세로축에 채권의 시장수익률을, 가로축에 만기시까지의 잔존기간을 각각 대응시켜 채권의 잔존기간과 그 수익률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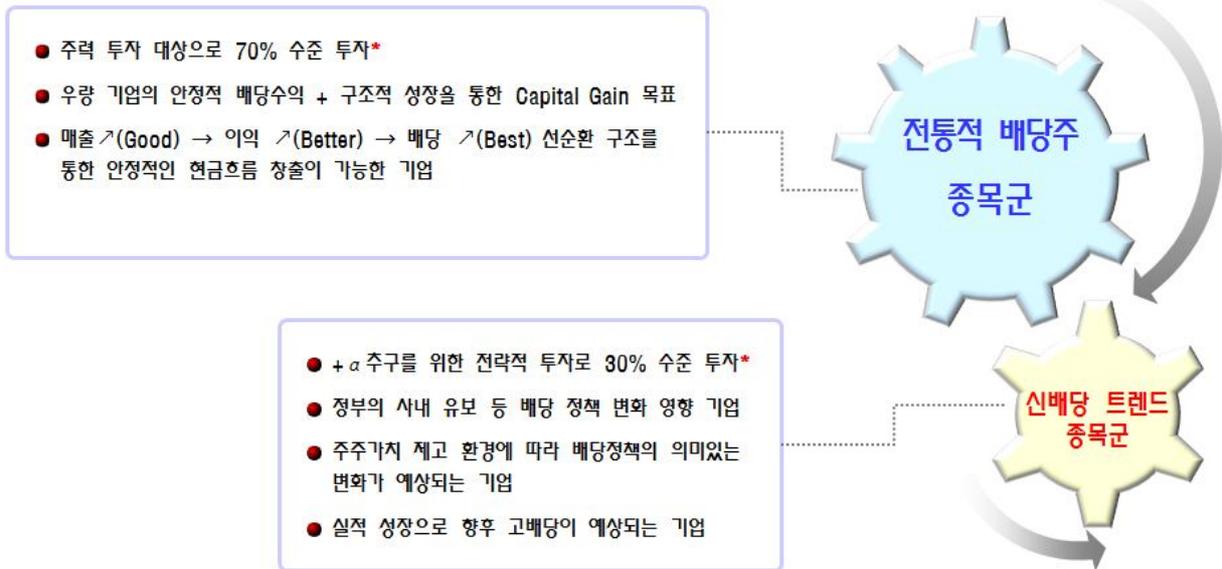
※ Rolling Effect(롤링 효과)란? 채권의 금리수준이 일정하더라도 잔존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같이 잔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수익률이 하락,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

※ Bullet이란? 장, 단기물의 비중을 줄이고 중기물의 매입 비중을 확대시켜 다른 잔존기간의 채권 보유 비중을 상대적으로 축소한 가운데 중기물과 같은 일정 잔존기간의 채권을 위주로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 이 방법은 채권연역전략을 위해 현금 흐름을 만기일 주변에 집중시킴으로써, 투자기간 중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변동이나 채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채권투자 종료시 채권포트폴리오의 실현수익률을 투자시점의 목표수익률과 일치시키는 전략

※ Barbell이란? Bullet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포트폴리오의 구성 채권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할 경우 중기채를 제외시키고 고 단기채와 장기채 두 가지에 집중하여 만기를 구성하는 전략

▶ 유진 챔피언배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전통적 배당주종목군에 전체 주식투자 자산총액의 70% 수준에서 투자하고 전체 주식투자 자산총액의 나머지 부분을 신배당 트렌드종목군 및 공모주종목군에 투자합니다.
 ※ 전통적 배당주종목군, 신배당 트렌드 종목군 및 공모주종목군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비율로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년도 배당수익률 기준 저평가 기업 중 구조적 실질 개선 기업 매수, 주가상승으로 배당수익률을 저하 시 매도전략이 수행됩니다.



* 상기 투자비율은 자료작성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비율로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 배당주 종목군

- 시장 배당수익률 이상의 배당수익률을 기대하는 기업
- 실적 성장 혹은 배당성향의 증가로 배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
- 배당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실적을 시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고유 경쟁력이 확보되는 기업
- 시장지배력, 높은 기술력, 우수한 경영진 보유 등 장기 경쟁력이 보유한 기업

신배당 트렌드 종목군

- 정부의 배당 정책과 주주가치 제고 노력으로 배당수익률이 증가 예상되는 기업
- 공기업, 사내 유보과다기업,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배당성향을 가진 기업 등

추가 전략 : 제한적인 공모주 투자

- 사전 종목 필터링 : IPO종목 중 엄격한 투자심사를 거쳐 선별된 종목 중심으로 공모 청약
- 상장 후 사후 관리 : 실적 및 전망에 따라 상장 이후 추가 상승여력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보유예정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유진 챔피언증권모투자신탁

(채권)의 수익증권에 50%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유진 챔피언배당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 30% 이하로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회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원본 손실위험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주식의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은 미래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위험과 쿠폰의 재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 상환 만기를 가진 채권은 단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에 비하여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가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 대부분이 상환되는 시기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자본손실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은 일정 매기마다 수령하는 이자액(Coupon)을 다시 재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변동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중간에 수령하는 이자액을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동

	일하게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권시장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므로 만약 지급받은 이자액을 재투자하는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 투자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투자신탁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 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의 미래의 경제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단기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 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 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배당금액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또는 제한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연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거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도 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이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최저순자산액이 10억원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p>대량환매 위험</p>	<p>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공정가액 산정위험</p>	<p>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p>
<p>거래중지 위험</p>	<p>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험</p>	<p>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격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p>
<p>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p>	<p>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운용프로세스 위험</p>	<p>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p>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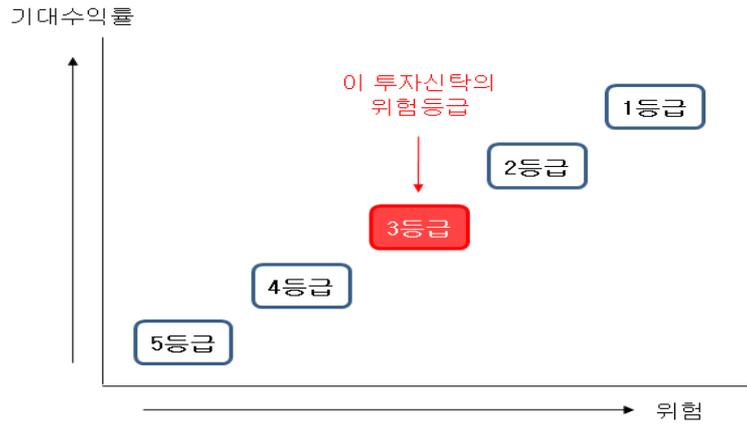
▷ 투자위험등급 : **3 등급 (중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및 원본손실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국내채권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범위내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과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및 배당수익, 자본이익을 추구하며 주식 및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및 손실 위험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위험등급구분]

- 1등급: 매우 높음
- 2등급: 높음
- 3등급: 중간
- 4등급: 낮음
- 5등급: 매우 낮음



<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1등급	매우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사전 계획된 수익구조상 손실가능비율이 원금의 20%이상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40%초과 60%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펀드(주식형 및 주식파생형) • 사전 계획된 수익구조상 손실가능비율이 원금의 최대5%초과 20%미만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3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40%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30%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사전 계획된 수익구조상 손실가능비율이 원금의 최대5%이하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 자산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 사전 계획된 수익구조가 원금보존추구형으로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A-이상으로 한정) • 저위험 자산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유진자산운용(주)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Commodity), 리츠,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부담보부대출 및 대출채권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3.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자산유동화관련 채권(A+이하), 후순위채권, 주권관련사채권 등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

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4.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급), CP(A3급),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러한 중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5.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이상), CP(A2-이상), 현금성자산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6.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1등급씩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국제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8.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9.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0.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1.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 등)의 경우 운용방법 및 편입자산의 성향에 따라 별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 납입금액의 0.70% 이내

Class A-E : 납입금액의 0.35% 이내

(3)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매입 시 영업일은 판매 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등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를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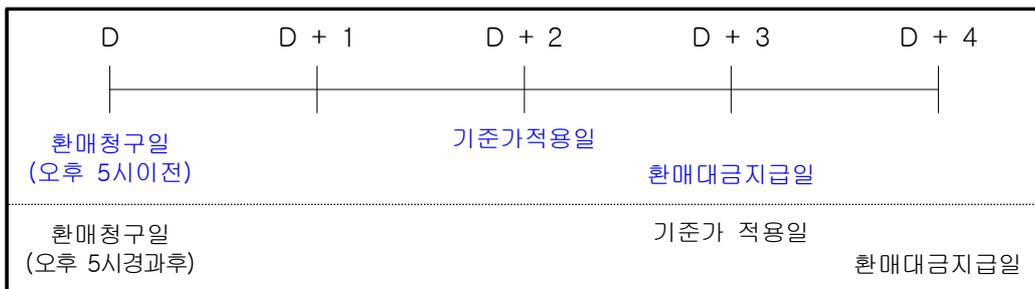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 자산락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5)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6) 후취판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 시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이 3년 미만인 경우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Class S : 환매대금 기준으로 0.15% 이내

(7)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8)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9)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10)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1)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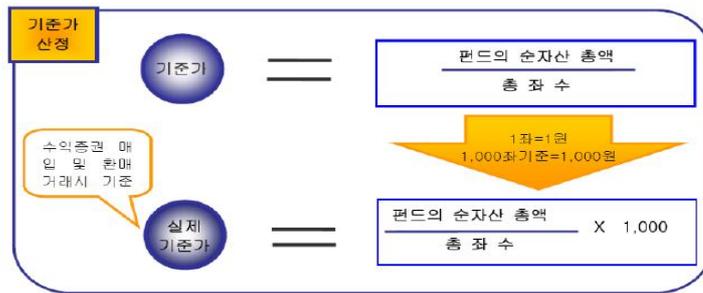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부분환매를 결정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각 영업점, 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1)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3)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집합투자재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3개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비상장채권(상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은 3개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계산시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에 의함.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부도채권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7-35(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

주1)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세부기준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들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비고 (지급시기)
	Class A	Class A-E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W	Class S	Class C-P1	Class C-P2	Class C-Pe	Class S-P1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0% 이내	납입금액의 0.35% 이내	없음									매입 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금액의 0.15% 이내	없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 시
기타비용	수익증권의 현물발행비용 등											발생 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 시)환매시점에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2)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자가 최초 매입하는 Class A, Class A-E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과되며, 각각 납입금액의 0.70%, 0.35%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3) 후취판매수수료는 Class S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과되며, 환매 시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이 3년 미만인 경우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후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 시기
	Class A	Class A-E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W	Class S	Class C-P1	Class C-P2	Class C-Pe	Class S-P1	
집합투자업자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최초설정 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0.40	0.20	1.00	0.50	0.04	0.00	0.25	0.80	0.75	0.40	0.24	
신탁업자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총 보수	0.85	0.65	1.45	0.95	0.49	0.45	0.70	1.25	1.20	0.85	0.69	
기타비용	0.0021	0.0000	0.0000	0.0000	미설정	미설정	0.0000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8521	0.6500	1.4511	0.9500	0.49	0.45	0.7000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포함)	0.8551	0.6532	1.4544	0.9533	0.49	0.45	0.7000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
증권거래비용	0.2562	0.2892	0.2729	0.2672	미설정	미설정	0.2731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12.16 ~ 2014.12.15]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12.16 ~ 2014.12.15]
-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실제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투 자 기 간			
		1 년 후	3 년 후	5 년 후	10 년 후
Class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7	340	539	1,11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포함)	157	340	539	1,114
Class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1	243	397	84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포함)	101	243	397	845
Class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9	462	798	1,74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포함)	149	463	800	1,750
Class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7	304	528	1,17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포함)	98	305	529	1,174
Class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0	158	275	61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포함)	50	158	275	617
Class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6	145	253	56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포함)	46	145	253	568
Class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2	225	391	87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포함)	72	225	391	873
Class C-P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8	398	690	1,51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포함)	128	398	690	1,518
Class 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3	383	663	1,46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포함)	123	383	663	1,461
Class 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7	272	473	1,05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포함)	87	272	473	1,052
Class S-P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0	221	385	8,60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포함)	70	221	385	8,607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주2) 이익금은 모두 채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투자신탁을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현황 유진 챔피언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Class A	Class A-E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W	Class S	Class C-P1	Class C-P2	Class C-Pe	Class S-P1	
최초 설정일	2015.01.05	미설정	2015.01.05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2014.12.30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가입 자격	가입 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 부과	판매 회사 온라인(On-line) 전용이며, 판매수수료 부과	제한 없음	판매 회사 온라인(On-line) 전용	집합투자기구, 기관 투자자, 100억원 이상 매입 한 기인 및 500억원 이상매입 한 법인	판매 회사 일임형 Wrap Account	후취 판매 수수료 부과 및 아래의 Class S 가입자격 참조	연금지축 계좌 전용 (Class C-P1 가입자격 참조)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Class C-P2 가입자격 참조)	온라인에서가입 가능하며, 연금지축 계좌전용 (Class C-Pe 가입자격 참조)	연금지축 계좌 전용 (Class S-P1 가입자격 참조)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이내	납입금액의 0.50%이내	-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3년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집합투자업자	연 0.65%	연 0.65%	연 0.65%	연 0.65%	연 0.65%	연 0.65%	연 0.65%	연 0.65%	연 0.65%	연 0.65%	
	판매회사	연 0.70%	연 0.35%	연 1.00%	연 0.50%	연 0.04%	연 0.35%	연 0.80%	연 0.75%	연 0.40%	연 0.24%	
	신탁업자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사무관리회사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총 보수	연 1.40%	연 1.05%	연 1.70%	연 1.20%	연 0.74%	연 1.05%	연 1.50%	연 1.45%	연 1.10%	연 0.94%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대상 자산(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대상 자산(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 외 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금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 이연퇴직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p>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p> <p>①세액공제(2015.01.01. 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p> <p>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기 (2013.12.16. ~ 2014.12.15.)	회계감사 면제	해당사항 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기		
	(2014.12.15)		
운용자산	1,657,284,717	0	0
증권	1,649,237,575	0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8,047,142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356	0	0
자산총계	1,657,290,073	0	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0	0	0
부채총계	0	0	0
원본	1,623,127,434	0	0
수익조정금	23,838,373	0	0
이익잉여금	10,324,266	0	0
자본총계	1,657,290,073	0	0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기		
	(2013.12.16 - 2014.12.15)		
운용수익	10,327,856	0	0
이자수익	2,643,601	0	0
배당수익	5,857,200	0	0
매매/평가차익(손)	1,827,055	0	0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3,590	0	0
당기순이익	10,324,266	0	0
매매회전율	41.4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원]

과 목	제1기(2014.12.15)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8,047,142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8,047,142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0		0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649,237,575		0		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649,237,575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5,356		0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5,356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657,290,073		0		0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0		0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0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0		0		0
자 본						
1. 원 본	1,623,127,434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34,162,639					
(발행좌수 당기: 1,623,127,434 좌		이익잉여금	10,324,266	0		0
전기: 좌		수익조정금	23,838,373			
전전기: 좌)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원						
전전기: 원)						
자 본 총 계		1,657,290,073		0		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657,290,073		0		0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1기(2013.12.16-2014.12.15)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8,500,801		0		0
1. 이 자 수 익	2,643,601					
2. 배당금수익	5,857,200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5,067,184		0		0
1. 지분증권매매차익	4,330,113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176,912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20,560,159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3,240,129		0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17,084,584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6,155,545					
운 용 비 용		3,590		0		0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3,59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0,324,266		0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06360724				

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12.16 - 2014.12.15	0	0	17	17	1	1	16	17

가. 종류형 펀드

유진 챔피언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lass 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12.16 - 2014.12.15	0	0	13	13	0	0	13	13

유진 챔피언배당주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Class A-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12.16 - 2014.12.15	0	0	1	1	0	0	1	1

유진 챔피언배당주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Class C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12.16 - 2014.12.15	0	0	2	2	0	0	2	2

유진 챔피언배당주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Class 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12.16 - 2014.12.15	0	0	1	1	0	0	0	0

유진 챔피언배당주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Class S

[단위:억좌,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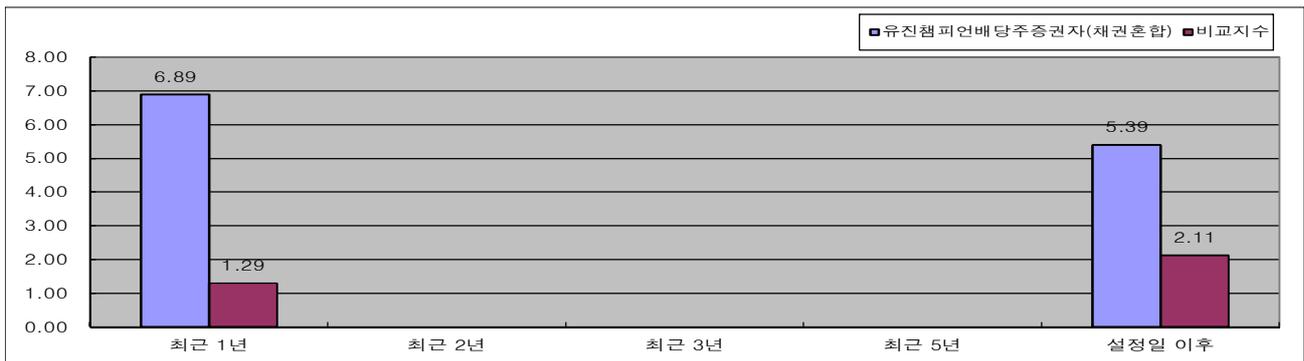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12.16 - 2014.12.15	0	0	0	0	0	0	0	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4.11.25 ~15.11.24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13.12.16 ~15.11.24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자(채권혼합)	6.89				5.39
비교지수	1.29				2.11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자(채권혼합)Class-A	5.99				4.50
비교지수	1.29				2.11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 A-E	6.25				4.53
비교지수	1.29				0.24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 C	5.53				3.79
비교지수	1.29				0.24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 C-E	6.07				4.33
비교지수	1.29				0.24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자(채권혼합)Class-S	6.23				6.20
비교지수	1.29				2.00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 C-P1					1.06
비교지수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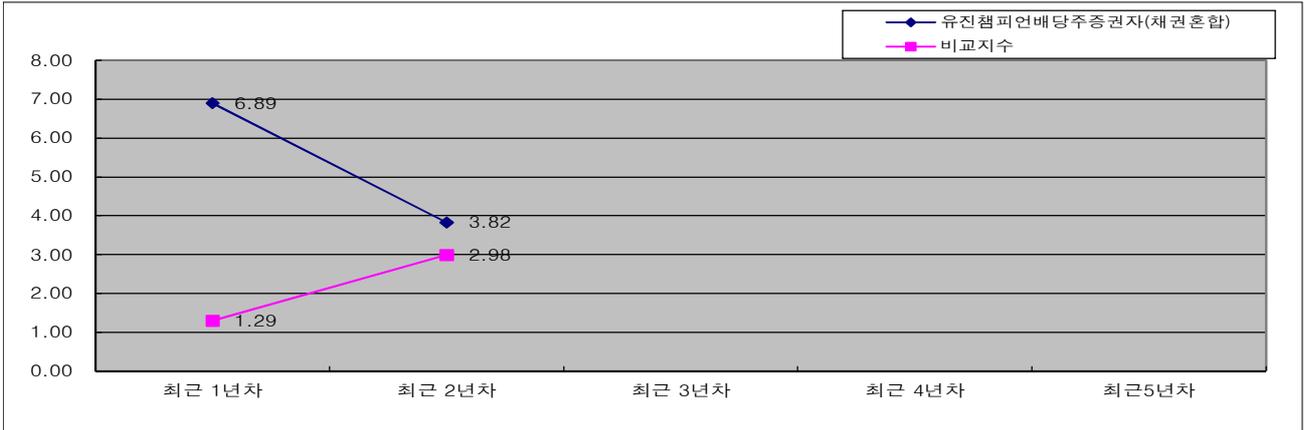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KOSPI배당주 30% + 매경BP단기지수 7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4.11.25 ~15.11.24	13.12.16 ~14.11.24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자(채권혼합)	6.89	3.82			
비교지수	1.29	2.98			
챔피언배당주증권자(채권혼합)Class C-P1	5.99	2.94			
비교지수	1.29	2.98			
챔피언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 C-P1	6.25				
비교지수	1.29				
챔피언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 C-P1	5.53				
비교지수	1.29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 C-P1	6.07				
비교지수	1.29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자(채권혼합)Class C-P1	6.23	6.07			
비교지수	1.29	3.18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 C-P1					
비교지수					

(주1) 비교지수 : KOSPI배당주 30% + 매경BP단기지수 7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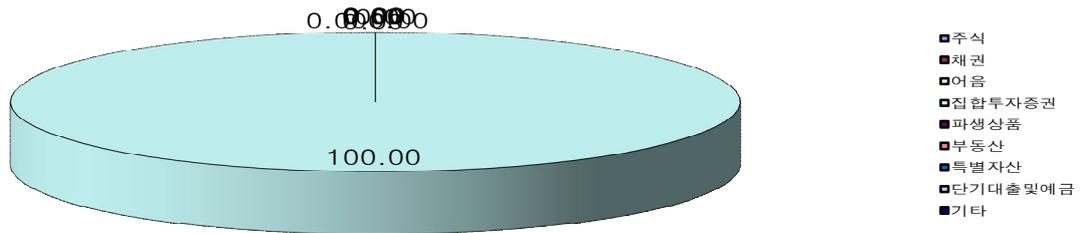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5.09.15. 현재 / 단위: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103	0	0	0	0	0	0	0	103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합계	0	0	0	103	0	0	0	0	0	0	0	103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주1)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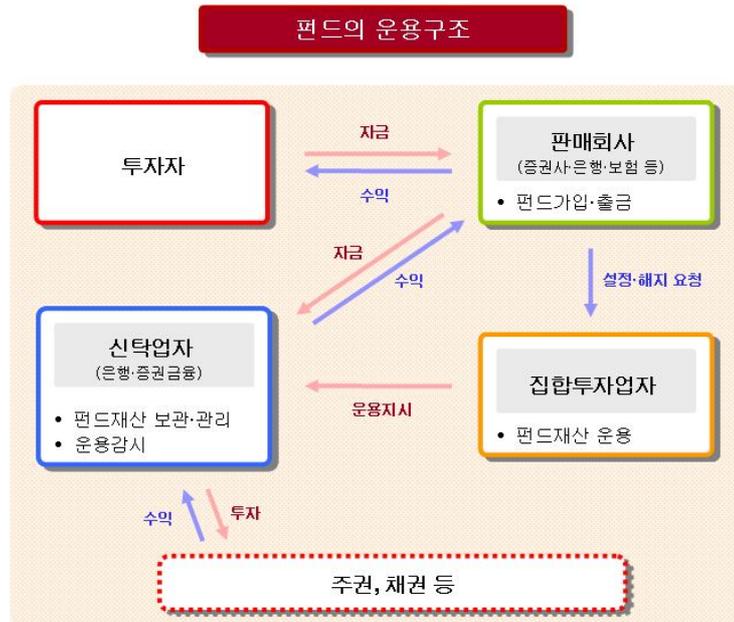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 4)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 5)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 6)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 7)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유진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02) 2129-3300, http://fund.eugenefn.com)
회사 연혁	1989.09 우성투자자문 설립 1991.05 한일은행 그룹에서 인수, '한일투자자문'으로 상호변경 1996.09 '한림투자신탁운용'으로 업종 전환 (대림그룹과 합작) 1998.05 '한일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1999.06 세계적인 투자가인 소로스가 경영권을 가진 서울증권 인수 2006.04 '서울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6.12 유진그룹에서 서울증권 인수, 유진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8.01 '유진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자 본 금	200억원
주요주주현황	유진투자증권(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선관의무 등

-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아이타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정 과 목	제 26기 2014.12.31	제 25기 2013.12.31
요약대차대조표	자산총계	32,126	28,128
	Ⅰ. 현금 및 예치금	15,837	18,960
	Ⅱ.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016	0
	Ⅲ. 매도가능금융자산	4,918	3,676
	Ⅳ. 파생상품자산	293	478
	Ⅴ. 지분법투자지분	0	0
	Ⅵ. 대출채권	111	103
	Ⅶ. 유형자산	131	175
	Ⅷ. 기타자산	4,820	4,736
	부채총계	1,616	1,959
	Ⅰ. 예수부채	0	0
	Ⅱ. 차입부채	0	0
	Ⅲ. 기타부채	1,616	1,959
	자본총계	30,510	26,169
	Ⅰ. 자본금	20,000	20,000
	Ⅱ. 자본잉여금	0	0
	Ⅲ. 이익잉여금(결손금)	9,517	6,143
	Ⅳ. 자본조정	0	0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93	26
	부채와 자본총계	32,126	28,128
요약손익계산서	Ⅰ. 영업수익	17,458	12,587
	Ⅱ. 영업비용	9,291	6,418
	Ⅲ. 영업이익	8,166	6,169
	Ⅳ. 영업외수익	2	0
	Ⅴ. 영업외비용	59	2
	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8,109	6,168
	Ⅶ.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264	5
	Ⅷ. 당기순이익	8,374	6,163

라. 운용자산규모

[2015.11.24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327	8,174	3,748	0	1,204	4,577	0	8,732	7,591	0	4,310	39,66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외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1544-3000 www.keb.co.kr
회사 연혁	1978. (구)외환카드 설립 1999. 외환카드(주)와 외환할부금융(주)합병 2001. 증권거래소 상장 2004. 외환신용카드(주)합병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신탁업자의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 ☎ (02)2168-0400 www.shinhanaitas.com
회사 연혁	2000. 06. 15 설립 2000. 09. 04 금융감독원 등록

(2)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식회사	NICE피앤아이주식회사	FN자산평가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29 ☎ (02)3770-0400
회사연혁	2000.05 설립 2000.07 금융감독원등록	2000.06 설립 2000.06 금융감독원 등록	2011.06 설립 2011.09 금융감독원 등록
자본금	50억원	30.2억원	50억원

(2)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

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이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이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이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설정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4)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로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fund.eugenefn.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등 법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이내

- 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단위:백만원]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① 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투자목적 : 설정 초기 집합투자기구의 적정 운용규모를 확보하여 계획된 운용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고유재산 투자
- 투자금액 : (금액) 2,482,620,715원 / (좌수) 2,368,873,308좌

- 투자기간 : 최소 1년 이상 유지할 계획이며, 적정 운용규모에 도달하여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시점까지 투자 예정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추구 혹은 손실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채권,특별자산,부동산(부동산 관련증권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펀드의 가격으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가입(매입)시 또는 환매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총회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로서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계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사모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 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